

이혼 사유(事由)의 사회적 구성: 사회적 통계와 언론보도 내용의 분석을 중심으로

최 상 진 김 은 미* 차 영 란
중앙대학교 강남대학교 수원대학교

한국의 부부 관계에서 이혼은 공유해 왔던 부부 관계의 전제와 신념을 전면 부정하는 자기 및 상대 부정적 사건이자 현상으로, 최근 결혼과 이혼을 경제의 수익 손실 개념으로 보게 되면서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게 되었다. 재판상, 협의상의 이혼에서 다양화된 이혼 사유들에 대한 정당성의 결정은 사회적 담론 양식으로의 개인적이고 정에 의존하는 심정 문법 논리와 객관적이고 공적이고 이성적인 사리 문법 논리의 혼합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나 판단의 불가피한 개입은 일반적으로 한국인에게 있어서 담론의 복합적 또는 선별적 혼용으로 이론 논리적 사고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이혼 논리를 전개하게 만든다. 이 연구는 결국 이혼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문화적, 사회-심리적 과정이요 구성으로 보고 이혼 현상과 이혼에 관련된 사고가 사회 문화적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이혼, 이혼사유, 심정논리, 사리논리, 문화

† 교신저자 : 김은미,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읍 산 6-2
Email : MJ0102@paran.com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2003년 한해 16만7천건으로 혼인 수에 대한 이혼수의 비율이 54.8%였다. 조이혼률은 3.5건으로 전년도 보다 0.5건 증가한 수치이다. 2004년 한 해 동안 139,365쌍이 이혼하여 2003년 한 해 동안 이혼수에 비해 27,731쌍이 감소하였다. 올해 한해 비록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이혼율도 이제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0개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혼이 많아지다 보니 이혼 풍속도 과거와는 판판이다. 예전엔 외도나 성격차이로 갈라서는 부부가 많았으나 요즘엔 경제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오래된 부부의 황혼(黃昏)이혼도 유행처럼 번진다.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비중이 18.3%로 10년 전의 5.3%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한 남녀 모두 초혼 구성비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재혼 구성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994년 35만 6천 건에서 63만 6천 건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자의 재혼 구성비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여자의 재혼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 10명 중 7명이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어느 상담기관의 여론조사결과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이처럼 헤어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혼을 도와주는 업체가 생겨났다. 이혼수속을 법적으로 마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건 물론이지만 보다 성공적인 이혼을 도와주는 “이혼전문” 인터넷사이트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혼 후의 경제적인 자립, 자녀문제 등 ‘성공적인 이혼의 노하우’를 알려준다. 이러다간 별탈없이 사는 사람까지도 이

혼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다.

이혼이란 말은 일상적인 말로 표현할 때 ‘헤어진다’ 라고 말한다. 보통 헤어진다 라고 말할 때 살 수 없어서 헤어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살 수 없어서 헤어지는 것은 이혼이라는 사건이 법률적 의미를 가질 때이지만, 실제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과는 결혼생활에서 불만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이혼과정이 시작되어, 이혼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는 단계, 이혼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고 주변사람들과 의논하는 단계,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단계, 그리고 별거 등이 법적 이혼의 전 단계로서 이혼과정에 포함된다(Booth & White, 1980). 이혼이 부부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의 상담 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나 있다. 2003년도 면접 상담 중 이혼상담이 3,972건으로 전체 51.7%를 차지하고, 부부갈등 상담이 1,460건으로 전체 1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상담 사례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이혼상담의 사례에서 남녀 모두 40대가 가장 많으며 혼인 기간이 11년에서 21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아 40대 이상, 혼인기간 11년에서 21년 미만 부부들이 이혼이라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주변사람들이나 전문 기관에 상담을 의뢰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들의 상담내용중 이혼의 사유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성격차이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 상담이 가장 많아 전체 이혼상담의 45.8%를 차지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이혼사유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꼽은 경우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도 전체 61.6%로 가장 많았는데, 6

호 사유 중에서도 성격차이가 여성은 12.8%, 남성은 23.7%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이혼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에게도 진행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많은 부분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고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이혼의 정당성 내지는 합리성을 확인받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이라는 사건이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 결론이 지어지는 것이지만,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았다. 즉, 이혼이라는 사실적이고 법률적인 의미를 갖추기 위한 절차 속에는 사회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타당한 이혼의 이유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혼의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결정의 과정에는 이혼의 사유를 설명내지는 지칭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혼의 진행과 결정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의 적절한 이유에 대한 사회·문화적 해석방식과 이혼 토로의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담론의 상호작용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혼결정의 역사적 추이

물론 이혼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다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유도 비교적 단조로웠고 일방적이었다. 삼국시대에는 남녀의 성규범이 이중적이어서 남성의 부정은 용납이 되었으나 여성의 부정은 비난과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 또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는 남편의 의사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고 노비로 삼을 수 있었으며

대를 잊지 못할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였으나, 이 시기는 남성에 의한 이혼은 가능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혼의 권리가 없었다(김정옥 등, 2000), 고려시대에도 이혼 제도는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남성에 의한 일방적 이혼이 가능하였다. 특히 부모의 승낙 하에 부인을 내쳐도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여성의 부정행동은 중요한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칠출 삼불거의 제도를 두었는데, 이는 이혼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원인이 없이 이혼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이기도 하였다(이종한, 2000). 일제시대에는 이혼제도는 구관습법에 의하였는데, 배우자가 중혼을 하였거나, 처가 간통하였거나, 배우자가 처형되었거나, 심한 학대를 받았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으로 구체적인 이혼의 사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도 남성과 여성의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의 이혼과 관련되는 규정들은 범죄행위를 하였을 때나 집안의 대를 잊지 못하였거나 여성이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하는 사회의 규범이나 인륜을 저버린 경우에 남성에 의한 일방적인 이혼이 주로 가능하였다. 유교적인 제도상의 이혼사유는 가능하였어도 부부합의에 의한 이혼이라기보다는 남성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이혼이 주로 이루어졌고,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었거나, 인본 중심적인 이혼의 사유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1958년 민법 제정시 파단주의 규정을 둠으로서, 무책적 원인이라 할지라도 혼인을 파괴하는 사실은 모두 이혼사유로 인정하는 경향이 생겨나 구체적인 이혼원인을 열거하기보다는 추상적이며 개념적인 이혼사유를 고려하게 되었다. 즉 가정 파단의 전형적인 실례인 ‘배

표 1. 통계청이 발표한 총 이혼건수 및 조(粗)이혼율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이혼건수(천건)	65.0	68.3	79.9	91.2	116.7	118.0	120.0	135.0	145.3	167.1	139.4
증감(천건)	5.7	3.3	11.6	11.3	25.5	1.3	2.0	15.0	10.3	21.8	-27.7
증감률(%)	9.6	5.1	17.0	14.1	28.0	1.1	1.7	12.5	7.6	15.0	-16.6
조 이혼율*	1.4	1.5	1.7	2.0	2.5	2.5	2.5	2.8	3.0	3.5	2.9

* 인구 1천명당 건

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와 같은 5개의 독립된 사유 이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게 되었다(김주수, 이희배, 1981). 이러한 6호의 이혼 사유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상대적이고 융통성 있는 이혼사유로서, 해석이나 적용이 시대상황에 적응하는 신축성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뿐 아니라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이종한, 2000). 이와 같은 제도상의 결과로, 배우자에게 어떤 사유나 결점이 없더라도 조정의 가망이 없을 때 이혼을 허용하는 무결점 이혼법은 이혼율을 과거보다 높이는 법적 장치가 되었다(이정덕, 김경신, 문혜숙, 송현애, 김일명, 1998).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04년 한 해 동안 139,365건(1일 평균 381건)이 이혼하여 2003년 한 해 동안 이혼한 167,096건에 비해 27,731건이 감소하였다. 2004년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2.9건으로 나타나 2003년 3.5건에 비해 0.6건이 감소하였다. 이는 언론매체

를 통한 높아지는 이혼율의 발표와 그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혼을 자제하지는 사회적 분위기(숙려기간 도입 등)가 점차 고조된 결과로 보여진다.

200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전체 16만 7천 건의 이혼 중 배우자 부정 12,287건, 정신적 육체적 학대 7,163건, 가족간 불화 21,735건, 경제문제 27,354건 성격차이 75,706건 건강상의 이유 1,025건 등으로, 어떤 다른 사유보다 성격차이에 의한 이혼이 많았다. 2004년의 자료에서는 이혼의 주된 사유는 성격차이 49.4%, 경제문제 14.7%, 가족간 불화 10.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 비율은 2003년도 보다 다소 감소하고 성격차이로 인한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성격과 관련되는 이혼사유에 대한 구체화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한 다른 측면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해준다고 하겠다.

오늘날에는 성격이 안맞는다 든가 인격적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것 등도 헤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고, 또한 부부가 협의 하에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인해 이혼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혼증가 현상

표 2. 통계청이 발표한 이혼 사유(2004년)

(단위: 천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120.0	135.0	145.3	167.1	139.4
배우자 부정	9.7	11.8	12.6	12.3	9.7
정신·육체적 학대	5.2	6.3	6.9	7.2	5.9
가족간 불화	26.3	23.8	20.9	21.7	14.0
경제문제	12.8	15.6	19.7	27.4	20.5
성격차이	48.2	58.1	65.0	75.7	68.8
건강문제	1.1	1.0	0.9	1.0	0.9
기 타*	16.8	18.5	19.3	21.8	19.6
구 성 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배우자 부정	8.1	8.7	8.6	7.3	7.0
정신·육체적 학대	4.3	4.7	4.8	4.3	4.2
가족간 불화	21.9	17.6	14.4	13.0	10.0
경제 문제	10.7	11.6	13.6	16.4	14.7
성격차이	40.1	43.0	44.7	45.3	49.4
건강문제	0.9	0.7	0.6	0.6	0.6
기 타	14.0	13.7	13.3	13.1	14.1

은 부부는 평생의 반려자라는 절대적이었던 가치가 우리사회에서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또한 개인중심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이기도 하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이 적어진 것도 한 가지 이유는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간단한 이혼성립의 적절한 이유가 과거와 현재의 역사·문화적 환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합의는 동 사회 내에서 사회적 규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역할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

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바, 그 준거 내에서 사람들은 특정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규범 내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스스로 그리고 타인과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찾게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적절한 귀인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다른 한편, 오늘날 언론이나 사회적 담론에서 이혼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의미의 ‘헤어진다’라는 말과는 그 뉘앙스가 다르다. 이혼을 개인의 “삶의 실패”라는 낙인적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적응을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법적인 의미의 이혼이라는 낙담과 더불어 여권신장,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님, 자기실현, 자기주창, 독립적 개인 등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이데올로기가 이혼이라는 말과 결합되어 있다. 또한 이혼의 동기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면 헤어지는 경우에서처럼 못살겠어서 이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다는 배우자로 바꾸기 위해, 보다 질 높은 삶을 살기위해, 이혼에서 수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정적 인간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헤어진다’는 말과 이혼은 이데올로기적, 기호학적으로 실제적 측면과 동기적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이혼에 관계된 통계나 조사연구 결과를 일별해보면, 과거와 같이 이혼은 ‘개인적 재앙’이라는 사고가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행을 탈피하여 새로운 행복의 추구’로까지 변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4년 8월 ‘리서치 앤 리서치’의 성인 조사에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율이 거의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는 43%로 나타난 바, 이는 적어도 이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약화되거나 깨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이혼을 생각해 본 여성들의 응답비율이 남성보다 13%나 높게 나타난 점은 결혼 배우자에 대한 실망이나 피해의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큼을 시사하고 있다.

연령과 동거기간에 따른 이혼비율에 대한 1994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통계청) 고연령층과 장기 동거부부의 경우에도 이혼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4년 이혼한 부부의 동거기간을 보면 4년 이하 함

께 살았던 비율은 25.2%로 10년 전(94년) 33.7%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년 이상 함께 살았던 부부의 비율은 94년 7.2%에서 2004년 18.3%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5세(11,630건)에서 34세(30,553건)에 이혼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으며, 40세 초반(7천건 이상)에 약간의 상승이 있었으며, 이는 연령증가와 더불어 감소하다가 54세경(6,890건)에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30세에서 38세 경이 가장 많았으며(7천건 이상), 다시 42세에 증가하고(7,095건), 50세에서 54세 경에(7,611건) 다시 이혼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와 더불어 언론이나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등에서의 이혼에 대한 논의나 주장 또는 담론들을 종합해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혼은 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혼을 생각해보거나 이혼은 필요하면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이혼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아무리 잘못 되도 이혼하는 것이 이혼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이혼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부부들은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부부들은 이혼하는 가를 설명하는 데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부부간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보상을 준다면 유지될 것으로 보는 사회교환이론이다(Thibaut & Kelley, 1959). 이 입장에서 본다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보상보다 크면 그 관계는 서서히 진행되다가 그 관계가 해체된다고 본다. 또 다른 입장은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한 비용과 보상, 그리고 가능한 대안의 비용과 보상이 관계유

표 3. 동거기간별 이혼율(통계청, 2004)

(단위 :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년	33.7	32.6	32.1	31.0	29.4	29.2	29.3	28.2	26.9	24.6	25.2
5~9년	25.4	25.1	24.6	24.3	23.3	22.8	22.3	23.0	23.2	23.1	22.9
10~14년	21.3	20.6	19.6	19.5	19.2	18.9	18.7	19.0	19.4	19.6	18.9
15~19년	11.6	13.1	13.8	14.6	15.5	15.6	15.3	14.8	14.7	14.9	14.7
20년이상	7.2	8.2	8.9	9.8	12.4	13.5	14.3	14.9	15.7	17.8	18.3

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경제적 시각이다. 각자 개인들은 그들의 현재 관계의 비용과 보상을 비교하고 이득의 정도를 결정한다. 만약 개인들이 그들 결혼의 보상을 비용과 같게 보거나 그 이상으로 간주하면 그들은 이혼을 시도하지도 또한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보상이 비용보다 명백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다른 자원을 끌어와서 의존할 수 있다면 결혼은 여전히 수용적일 수 있다(김정옥, 2000; Becker, 1974; Wright, 1985). 결혼 외적인 자원의 양과 가치가 크면 클수록 불만족스러운 관계는 쉽게 떠나게 된다. 딸을 시집보낸 부모가 자기 딸이 변변치 못하거나 인성이 잘못된 남자를 만났다고 확신할 때 하루빨리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정이 들기 전에 그리고 자식을 갖기 전에 이혼하는 것이 부담이 적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러한 생각은 이혼의 당사자인 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러한 사고의 배경에는 결혼에 대한 공리적 타산의식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기계적인 관점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혼을 하는 것과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사회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인

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관계문화이다. 따라서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영향과 주변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혼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혼의 의도와 시도, 그리고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이혼 의도는 결혼 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나, 여성의 이혼 시도와 경험, 이혼 계획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이혼 반대였다는 것이다. 결혼생활에 있어서 만족할 수도 불만족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이혼을 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이혼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이경성, 2001). 또한 대구가정법률 상담소의 자료에 의하면,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13.5%)라는 것은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부개인의 삶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의 시각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요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혼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않은 이상 미지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혼 후의 새로운 정착이 불확실할 수도 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권 문제가 잘 정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녀의 교육 및 인성 발달 문제, 자녀에 대한 심리적 죄책감 문제 등이 이혼 실천 행위의 저지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 이혼율은 이혼 집착을 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이혼을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전통적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부부는 전통적으로 ‘부부일체’라거나 ‘당신 없이는 못산다’는 상호의존적 부부관계와 더불어 자녀를 위해 부부가 존재한다는 부모적 부부관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부부가 이러한 전통적 부부관계와 가족관을 행동으로 실천해왔느냐의 문제는 이들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문제가 74.6%라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이혼이 자녀에게 미칠 피해를 염려하여 정당한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한경혜, 김주현, 강혜원, 2004; 한남제, 1997). 부부관계를 중시하는 서구보다 한국의 이혼율이 낮은 이유는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혼이 자식의 죽음 다음으로 힘든 생활사건이다(홍강의, 정도연, 1982).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독립적인 개인으로 갈라서는 것을 지향하는 이혼행위는 물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자율적인 작위자로서, 자신의 행복 추구에서의 주체로서의 주장을 전제

로 한 이혼 제기행위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부부관계 신념과는 배치되는 모순적 행위로 자의식 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서구의 부부는 사랑으로 살고 한국의 부부는 정으로 산다고 믿는다. 서구인들은 사랑이 없어질 때 이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은 일단 들고 나면 없어지기 어려운 것이고 또 정이 깊어질수록 고운정과 더불어 미운정이 든다고 말한다(최상진, 2000;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Choi, Kim, & Kim, 1999).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부부관계는 끊기가 어렵다. 또한 정이 든 부부관계에서 이성적인 이혼사유를 들어 부부관계를 청산하자고 어느 한쪽이 제기할 때 이러한 행동은 상대에게 냉혈적인 사람, 무정한 사람, 소름이 끼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심지어는 자신을 파멸시킬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이혼은 당사자 모두에게 심각한 시련과 고통을 수반하는 외상적 경험이 된다. 그래서 이혼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인들은 모두가 정신적으로 소진하고 회상하기도 끔찍한 사건으로 마음속에 응결된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조정 위원인 최혜경은 이혼 조정과정에서 조정 단계까지 온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서 배우자를 비난하고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려고 애쓴다고 하였다. 이런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좀 더 일찍 하소연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고 올바른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담

론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더 강화시켜나가고 자신이 이해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한 부분, 즉 이혼과정에서 부부 관계 이전의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혼율이 낮아진다는 연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이혼의 시도 및 계획에는 주변 사람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이경성, 2001; 이경성, 한덕웅, 2001).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이혼의 과정이 담론에 영향을 받는, 그리고 그 담론의 대상이 어떠한 환경에서 누구와 경험하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성격차’ 때문에 이혼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시댁과의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타지에서 근무하는 남편 때문에 남편없이 시부모님을 3년 모셨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의 배려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상담이 끝날 때쯤 아내가 평평 울며 ‘다시 시작 하겠다’고 하더군요.”(상담위원 ㄱ씨) 다른 상담위원은 “술만 먹으면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부인이 우리가 소개해준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에 남편과 함께 다녀온 뒤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할 때 보람을 느꼈다.

이는 또한 이혼전 상담제도를 통한 이혼율이 감소되었다는 자료에 의해서도 이혼이라는 과정이 부부와 주변사람들의 의사소통을 통한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서울 가정법원이 시범실시하고 있는 ‘협의 이혼전 상담제도’가 순항하고 있다. 올 3월부터 협의이혼전 상담제도에 따라 실제로

상담을 실시해 본 결과 효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의이혼 신청 부부에 대한 법원의 확인율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한 협의이혼사건 중 이혼을 확인해준 경우는 88.62%였고, 지난 1월과 2월에도 각각 91.52%, 90.07%였으나 지난 3월에는 이혼을 확인해준 비율이 82.95%로 푹 떨어진 것이다. 상담을 마친 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이혼의사를 철회하거나 1주일간의 ‘숙려(熟慮)기간’을 거치면서 마음이 변해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나타나지 않는 부부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성격이나 생활습관 등에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부부들이 있는가 하면 결혼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 이혼하는 부부도 많다는 사실이다.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그 발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다. 즉 사건자체와 내용을 혼동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일이나 사건 중심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나를 무시 또는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자체가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황을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혼사례들 중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결혼생활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많다. 또 사소한 문제들인데도 적절히 대처하는 기술이 부족해 문제가 커져 이혼하기도 한다.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2003),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부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원만하게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문제를 회

피하는 수단으로 별거를 택한 후 별거가 장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부부관계에서는 내가 그 순간에 배우자를 이기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부부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신혼부부의 이혼율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서구적 개인 중심의 가치관, 서구식 합리적 부부관 등과 같은 서구적 사고방식이 젊은 세대에 확산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이혼현상과 이혼에 관련된 사고가 사회문화적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담론 심리학”에서 Harre와 Gillett(1994)는 인간의 심리는 사회적 담론을 통해 구성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의 마음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과 판단의 선택과정을 재구성해가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행동에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혼의 결정과정에서 성격적 요인으로 인해 이혼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배우자 부정, 정신적·육체적 학대,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이혼결정의 이유를 기술하기 보다는 자신과 상대 배우자, 그리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그럴 듯한 설명을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혼의 사유로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적 요인을 든다는 것은 이혼을 하되 그럴듯하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담감이 적은 요인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재하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혼 사유로서의 성격차이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의 기본 축은 우리성이다. 개인주의가 대인관계의 중심적 개념인 서구는 개인의 독립성, 정체성의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런 현상은 실제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때에도 자신의 독립성 정체성을 충실히 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과의 하나됨 형성을 지향하는 관계성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성 관계는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특성을 형성하게 한다. 즉 우리라는 개념은 구성원들 간의 동질의 마음을 통한 간 주관성의 형성 위에서 구축되어지는 심리적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최상진, 1999, 2000).

우리성 관계는 정을 바탕으로 한 심정관계이며 여기에서는 마음과 마음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의 개인주의가 객관적 합리적, 사리 논리적, 이성적 마음의 틀이 담론양식이라면, 우리는 정 중심적, 사적 관계적, 상대 배려적, 심정논리적인 담론의 형태가 주도적인 상호작용과 인식-경험의 틀로 작용한다. 이는 서양인의 사회적 관계가 인지적 요소가 중요하게 개입이 된다면,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감정이 중요하게 관여된다(최상진, 2000). 정과 마음을 교류하는 우리라는 사적인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의 설명개념으로 심정 논리를 그리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이해 관계적이고 공적인 대인관계의 설명개념을 사리논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한 특정한 말로 인해 섭섭함이나 야속함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왜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적 운명

내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심정의 분함이나 억울함을 토로하게 된다. 아울러 상대의 과거의 행동이나 과거의 사건에 대한 재해석과 재구성과정의 일어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언어적·비언어적인 전달매체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상대방으로 또는 제 3자로 부터 위안을 받게 된다. 이런 현상은 이혼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된다.

민법 제 840조는 이혼사유를 1) “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들 6가지 사유는 모두 부부관계를 성립시키기 어려운 조건으로 상정한 사유이다. 여기서 확실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5)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나 판단이 불가피하게 개입되기 쉬운 사유들이다. 예컨대, ‘부정행위’, ‘악의로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은 모두 행위당사자의 ‘의도성과 마음태세’를 어떤 형태로 읽어내고 파악했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현대의 심리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의도성’이나 ‘마음’은 당사자가 직접 말하기 전에는 이를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읽어낼 수 없다. 따라서 특정한 행위가 일어난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 또는 개연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정황적 개연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위 당사자의 의도성과 마음을 추론할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추론은 특정한

개인에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서 서구의 법정에서는 심리학이나 사회과학 전문가의 추론을 단지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혼 청구소송에서의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도성이나 마음이 비록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이혼을 원치 않거나 원고가 제기한 이혼 사유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원고의 주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의도성이나 마음을 진술 할 것이다. 물론, 한국의 법정에서는 최종적 판단 권한이 법관에게 맡겨져 있어 법관의 판단이 피고의 진술을 제압하고 우선할 수 있다.

1999년 가정법률 상담소를 거쳐 이혼으로 귀결된 사람 중 41%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의 항목에 해당되며, 이중 가장 큰 기타 사유 항목은 ‘성격차이’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러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사유가 진실되고 타당한 사유인가의 문제를 논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먼저 참고로 미국의 스포츠 스타 「심슨」의 승소 이후에 미국법관의 논평을 소개한다. 심슨이 재판에서 승소했을 때 미국 시민들은 이 재판이 잘못 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비판에 응답하여 미국의 한 법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의 재판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라는 재판 게임법칙에 따라 유죄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재판 활동과 정의의 구현은 별도의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성격차이의 사유에 의한 이혼과 결부시켜 보면 재판에서 이혼의 타당한 사유로서의 성격차이를 판정하는 기준은 법정의 기준과 해석방식에 따르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혼 재판에 관여된 원고나 피고는 자신의 진

실 된 경험이나 생각 또는 믿음과는 관계없이 법정 의 담론양식에 따라 자신들의 생각을 주조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며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이혼 재판은 변호사들이 구성한 모범답안을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진술하는 형태로 재현하는 활동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법정에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개인적으로 이혼을 마음먹거나 이혼에 관계된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은 타당한가?

일상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혼의 문제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때 이를 그 사람의 마음속 ‘거기에 있는 것(what is there)’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Harre & Stearn, 1995, p. 5; See also Danziger, 1997; Harre & Gillett, 1994). 그러나 마음속 ‘거기에 있는 것’은 본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담론(discourse)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 생각이 자기의 마음으로 읽혀지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시각의 이론은 ‘마음의 사회적 구성론’, 또는 보다 담론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담론을 통해 구성된 마음’, ‘담론 심리학’ 등으로 불리워 진다(Harre & Gillett, 1994). 담론 심리학은 기존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심리학에서 전제하는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을 강조한다. 오히려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즉 말하기 위해서 생각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말은 남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또는 남에게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생각의 문법은 말의 문법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혼 문제와 관련된 지배적 담론의 양식은 소위 여성의 인권과 권리

를 강조하는 진보주의적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지배 담론 프로그램 하에서는 남성의 권위, 남녀 차를 강조하는 보수적 담론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부장적 사고를 탈피하지 못한 미개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쉽다.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이혼사유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배적 담론 구조 밖의 비정상적 또는 탈규범적인 사유나 생각으로 부정시 되어왔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경제적 사유나 배우자의 혼외 성관계에 기인한 이혼보다 오히려 이성적인 사람들의 이혼사유로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있다. 성격에 의한 이혼사유는 또한 이혼은 평화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늘날의 이혼 이데올로기와 궤를 같이 한다. 만일 상대의 귀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제기할 경우나 남편(부인)이 가정을 의도적으로 유기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거기에는 피해자가 발생되며, 거기서 피해 당사자들의 감정적 분쟁은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성격이 서로 맞지 않아 이혼할 경우 그곳에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없이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불가피한 이혼으로 귀결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혼 관련 담론의 양식이 이혼 관련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사회 또는 당사자에게 이혼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사건인가 아니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인가에서부터, 이혼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혼 후에 어떤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가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혼 담론은 그러나 이혼의 전 과정에의 부부 관계적 삶의 양식과 배치된다는 현실이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오늘의 이혼 담론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저를 둔 서구적 담론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Stinnett, Walters, & Kaye, 1984, pp. 426-431). 그러나 부부 관계적 삶의 양식에 있어서는 지금도 전통적인 ‘부부 일심 동체감’과 개인을 희생하고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가족유지 최우선주의’를 규범적 가치와 부부 심리의 실체로 지각하고 수용해왔다. 이러한 전통적 부부의식은 이를 반영하고 지지하는 부부간의 담론에 의해 타당화되고 당연시되어 왔다. 부부간의 관계적 상호작용에서 보면, 부인은 남편에게 의존하며 응석을 부리고 남편은 이러한 부인의 행위에 대해 위로하고 달래주며 보호해주는 주군(主君)의 언행을 해 보이는 것이 전형적 한국의 부부관계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부부관계에서 이혼의 담론은 담론의 문법에서 상호 모순되며 배치되는 것이다.

이를 담론 문법의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부부간의 담론은 일심 동체적 ‘심정 문법적 담론’이라 한다면, 이혼 담론은 서로 독립된 개인이 이혼 관련 사건이나 행위를 놓고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이성적 사고에서 기초한 ‘사리 문법적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보통 후자인 사리 문법적 담론은 서로 모르는 사람간의 관계에서 또는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담론에서 또는 법정의 담론에서 사건의 발생원인과 일의 전개 이치를 밝히어 그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주로 통용되는 공적(公的)·공공적(公共的) 담론 양식이다. 반면 전자인 심정 문법적 담론은 우리성·정관계의 친밀 인간관계에서 사적인 논리와 심정의 논리를 적용하여 사건의 발생을 규정하고 해결하는 사적(私的)·인간관계적 담론 양식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두 가지의 담론 문법을 상황에 따라 선택

적으로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는 심정문법 논리를, 사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규범시하는 상황에서는 사리문법 논리를 적용한다(최상진, 김기범, 1999b; Choi & Kim, 1999).

이혼의 논리는 이 두 가지 논리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법정에서는 사리의 논리가 지배적 담론의 양식이 된다. 그러나 법정에 가기 이전의 이혼 담론과정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담론의 양식이 달라진다. 자기와 가까워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심정논리로 자신이 옳고 상대가 옳지 않음을 지적하는 담론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혼 상대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자신들의 이혼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제 3자와의 이혼 담론에서는 사리적 담론은 물론 심정을 토로하는 담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리논리적 담론의 형식으로 포장하여 자신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럴듯한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타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관계의 질적 특성에 대해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의 호오에 대한 판단과 결혼 관계의 유지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 주변사람들의 이해를 도모하게 된다. 또한 결혼관계 유지와 철회는 주변사람들과의 어떠한 내용으로 담론이 이루어지게 될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역으로 또한 담론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결혼관계가 유지될 것인지 해체될 것인지가 결정된다.

결혼관계에 불만족한 사람보다 만족한 사

람, 배우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한 사람보다는 호의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대안관계를 더 지니고 있었다. 이는 대안관계가 있을 경우 연인관계가 해체된 서구의 연구와는 상치되는 것이다(Drigotas & Rusbult, 1992). 따라서 대안관계의 질은 결혼관계가 불만족하거나 배우자를 비호의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쳤다(이경성, 2001). 또한 이혼 발생에 있어서 주변인의 반응, 경제지원 관리 자원, 정서지원 관련 자원과 같이 사회적 자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무영, 이소희, 2003)을 보면, 이혼 당사자들의 주변인과의 대인관계나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곧 이혼의 사유라는 것이 주변인들과의 담론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만일 이혼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담론의 양식을 복합적으로 또는 대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섞어서 사용하게 될 경우 담론의 당사자는 이혼의 원인과 귀책 및 사유에 대해 혼란된 사고와 심리적 경험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혼담론은 듣는 사람에게 일관된 논리성이 없는 횡설수설로 이해되기 쉽다. 이는 가사조정 상황에서 조정위원들에게 배우자의 행동이나 성격에 대해 심정토로를 하는 과정에도 잘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 협의 이혼 전에 “의무적인” 상담절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이혼이 줄었다는 가정 법원의 보도 자료의 발표에서 보듯이, 부부가 서로간의 이혼과정의 담론이 이혼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된다. 또한 부부간의 대화법 훈련을 통한 많은 대인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물(권정혜, 채규만, 2000; 김영환, 장문선,

2002; 모의희, 김재환, 2002)에서도 담론의 과정이 부부간에 중요함을 확인하는 단서가 된다.

심정의사소통과정을 통해 결혼생활의 부정적 감정을 대인관계상에서 호소, 한탄, 비탄하게 되고, 이런 과정은 상대로 하여금 심정토로 방식의 의사소통을 하게 만든다. 특히 앞에서 예시로 제시된 ‘성격이 맞지 않아서’의 이혼 사유 담론에서는 상대방의 성격추론은 물론 자신의 성격에 대한 자기 추론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이러한 성격 때문에 서로 조화되기 어렵다’는 또 다른 차원의 성격갈등 이론을 구성해야 한다. 이 모두가 추론이며 구성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이혼 관련 담론을 통해 ‘나는 이러이러해서 그 사람과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형태의 이론을 구성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형태의 추론과 이론을 ‘진실 된 사실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당화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자료(data)가 없는 경우는 이를 추론을 통해 메우어야 하고 특히 상대의 마음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정황적 상황에 근거한 추론을 상대의 마음 그 자체로 대치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첫째, 이혼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이혼에 대해 여성의 선택권이 거의 없었던 시기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58년도의 ‘무결점’ 이혼에 대한 제도가

생겨나고,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개인의 가치의 중요성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혼율은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둘째로 높아지는 이혼으로 인한 이혼의 사유는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사회적 허용이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여졌다. 즉 이혼의 사유가 그 시대의 설명 가능한 개념으로 만들어지게 됨으로서 사회적으로 적합한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담론양식이 이혼사유에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하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의 대부분은 상대방과 자신의 마음추론을 불가피하게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이러한 추론 역시 타인들이 수긍하고 수용하는 방향에서 구성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기 표현적 담론의 양식이 추론의 방향과 내용을 지배적으로 결정한다.

셋째로는 이혼의 사유로 성격 차이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려는 현상은 한국인의 정중심의 심정적인 대인관계 문법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부부관계에서 이혼의 사고와 담론은 전통적 부부관계와 상치되는 사리문법과 담론문법을 지니고 있다. 이혼의 사고와 담론은 서구적 사리문법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부부관계의 사고와 담론은 전통적 한국의 부부관계와 가족관계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언쟁이나 다툼이후에 이성적으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떻게 너가 나에게...’, ‘그러는 것으로 보아 나를 무시했음 이...’와 같은 심정의 상함을 토로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관계지향적이고 지위지향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지위에서의 관계와 의사

소통 과정에서의 전달 내용간의 불일치하는 것으로 인한 관계성의 충돌현상에서도 볼 수 있다(한규석, 2002).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는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관계중심적), 어떻게 “아내인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와 같은 전달 메시지의 충돌로 인한 갈등의 유발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부부관계에서 이혼은 그 동안 부부가 간주관적으로 공유해왔던 부부관계의 전제와 신념을 통째로 부정하는 자기 및 상대 부정적 사건이며 현상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이혼의 상대를 부정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이혼의 경험을 심리적 외상경험으로 체험하게 된다. 본격적 이혼 절차에 앞서 이루어지는 이혼담론은 심정논리 담론과 사리논리 담론의 혼합으로 이루어진다. 자신과 친근한 자기편 사람들에게는 심정담론을, 상대편 사람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는 사리담론을 사용한다. 그러나 심정담론도 상대와 상황에 따라 사리담론의 형식으로 포장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논리로 재구성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이혼에 대한 일관성있는 자기 논리가 결여된 횡설수설식 또는 심정토로식의 이혼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담론의 복합적 또는 선별적 혼용이 이혼논리적 사고의 체계성과 일관성 결여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이혼사유는 있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문화적, 사회-심리적 과정이요 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9a 참조).

이 논문의 한계는 이혼의 과정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 뒷받침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부부간의 이혼 담론의 진행과정과 이혼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담론의 과정을 명쾌하게

풀어낸다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혼을 줄이는데 좀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실증연구를 통한 이혼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확인이 우리 사회에서 이혼율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혼이 진행 과정에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주변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정혜, 채규만 (2000). 부부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207-218.
- 김성희 (2003). 청년 남녀의 이혼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75-85.
- 김영환, 장문선 (2002). 부부의사소통 패턴과 특징적 갈등대처 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31-347.
- 김정옥, 박경구, 구향숙, 한동희, 류도희, 전형미, 이현혜, 이은경, 정복희, 김성희, 장보임, 엄인숙 (2000). 새로 보는 결혼과 가족. 서울: 학지사.
- 김주수, 이희배 (1981). 가족 관계학. 서울: 진명문화사.
- 모의회, 김재환 (2002)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 심리치료, 14(4), 887-900.
- 이경성 (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97-119.
- 이경성, 한덕웅 (2001).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이 결혼만족과 이혼의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41-64.
- 이무영, 이소희 (2003). 이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가족 복지학, 8(2), 39-61.
- 이정덕, 김경신, 문혜숙, 송현애, 김일명 (1998).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종한 (2000). 이혼제도와 실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59-83.
- 최상진 (1999). 서론.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궁호, 이수원 (공저), 동양심리학: 서구 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pp. 9-30). 서울: 지식산업사.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1999a). 범죄의 사회-문화적 구성성: 여론과 언론보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137-150.
- 최상진, 김기범 (1999b).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1), 1-16.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정(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와 표현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02-223.
- 통계청 2003년 9월. 1999년 인구동태통계결과 (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 통계청 2004년 9월. 1999년 인구동태통계결과 (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 한경혜, 김주현, 강혜원 (2004). 성인 남녀의 이혼 과정 각 단계에서의 성별차이. 한국가족학회지, 9(2), 93-118.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남제 (1997). 한국 가족 제도의 변화. 서울: 일지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3년도 한국가정 법률 상담 통계 자료.
- 홍강의, 정도연 (1982). 사회재적응 평가척도 제작: 방법론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1, 123-136.
- Becker, G. S. (1974). A theory of marriage. In T. W. Schultz(Ed.), *Economies of the famil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oth, A. & White, L. (1980). Thinking abou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605-616
- Choi, S. C., & Kim, K. (1999). Shimcheong: The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Koreans' mind.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 Choi, S. C., Kim, J.-Y., & Kim, K. (1999). Sweet Cheong and hateful Cheong.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 Drigotas S. M. & Rusbult, C. E. (1992)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A dependence model of break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62-87.
- Harre, R., & Gillett, G. (1994). *The discursive min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Harre, R., & Stearns, P. (1995). *Discursive psychology in practice*. London: Sage Publications.
- Danziger, K. (1997). *Naming the mind*. London: Sage Publication.
- Thibaut, J. W., & Kelley, H. H. (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Wiley.
- Stinnett, N., Walters, J., & Kaye, E. (1984). *Relationships in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 차원고접수 : 2006. 5. 10.

심사통과접수 : 2006. 6. 9.

최종원고접수 : 2006. 6. 20.

Social Constructions of Divorce Causes: An Analysis of Social Statistics and Publicity

Sang-Chin Choi **Eun-Mi Kim** **Young-Ran Cha**
Chung-Ang University **Kangnam University** **University of Suwon**

Divorce is a self-denial and counterpart-denial affair or phenomenon which denies the husband and wife conception and mutual belief completely. Recently in Korea, the rate of divorce has increased rapidly, since marriage and divorce has been viewed on the basis of economic benefits and losses. In court or in the mutual consent process of divorce, whether the causes of divorces are reasonable or not is affected by the mixture of the logic of **Shimcheong* and reason as a pattern of social discourse. Unavoidable intervention of one's subjective interpretation or judgement in Korean social situation makes the persons concerned develop the logic of their divorces, which is lack of systematic and consistent thought, by the comprehensive or selective mix of discourse. This review paper argued that there were no specific reasons in divorce, but the affair of divorce and the thoughts about divorce were sociocultural process through discourse and closely related to socio-cultural changes.

key words : divorce, causes of divorce, shimcheong logic, rational logic, culture

* *Shimcheong* is a Korean word denoting personal experiences felt in mind.